



문서번호 공원녹지과-1412 결재일자 2015.2.6.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

2015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추진계획



2015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추진계획

우리구 아파트의 노후된 담장을 철거한 후 개방하여 열린숲길 조성 및 생활권 주변의 부족한 녹지확충,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으로 주민만족도 제고

┃ 추진근거

- 2015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대상지 추천[성수1가제1동-5308(2014.7.9)]
- 2015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추진계획[조경과-1534(2015.2.4)]

Ⅱ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5. 1. ~ 6.

○ 위 치 : 성동구 성수강변건영아파트(성수1가1동 710)

○ 규 모 : 1.500 m²(담장철거 150m)

○ 총사업비 : 75백만 원(시비 45, 구비 30)

※ 구비(자부담)는 공원녹지 시설개선비(포괄비) 활용하여 확보

○ 사업내용 : 노후된 담장철거, 열림숲길 조성 및 개방, 녹지량 확충 등

○ 예산과목 : 조경과, 생활주변녹지확충, 생활주변녹지확충, 아파트열린녹지조

성, 자치단체자본보조(시비)

공원녹지과,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개발, 조경정비 및 관리, 공원

녹지 시설개선, 시설비 및 부대비, 시설비(구비)

Ⅲ 추진방향

- 설계·시공 및 관리 등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유도
- 수목식재 위주의 녹지를 조성하고 시설물 설치 최소화
- 기존 녹지훼손 및 아파트내 녹지(담장주변 외의 지역)정비 지양

Ⅳ 세부추진계획

- 지원 대상지확정
 - 입주민의 2/3 동의 및 7년간 녹화협약 체결 [협약서(안) 붙임]
 -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저층 입주민의 의견 수렴
- 🔲 사전절차 이행
 - 주택법 제42조제2항(공동주택의 관리 등)에 의한 행위허가
 - ※ 공동주택의 입주자·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·절차 등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 - 1.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라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
 - 2.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

Ⅴ 추진일정

○ 2015. 2. : 주민동의 및 행위허가(주택과) 사전절차 이행

○ 2015. 2. ~ 3. :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주민설명회

 \bigcirc 2015. 3. \sim 4. : 서울시 설계심의 및 계약원가 심사

○ 2015. 4. ~ 6. : 공사시행

Ⅵ 위치도 및 현황사진

